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6

2022년 9월 28일
보건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**발의일자 및 발의자** : 2022년 8월 29일 김영옥 의원(찬성 28명)
2. **회부일자** : 2022년 9월 2일
3. **상정일자** :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2년 9월 23일 상정· 의결(원안 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영옥 의원)

1. 제안이유
   ○ 영아가정의 양육현실을 고려한 돌봄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,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으로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. (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)

○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을 수행을 위해 자치구, 법인 및 기관, 단체 등에 행정적,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2항)

○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2항제3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조례안의 개요

○ 동 개정안은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돌봄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범위를 공공에서 민간 및 가정으로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사업 범위 확대(안제6조제1항제7호 신설)

○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열린육아방(제1호), 공동육아나눔터(제2호), 우리동네 보육반장(제3호), 아이돌보미사업(제4호), 우리동네키움센터(제5호), 지역아동센터 운영(제6호)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
현행 제6조제1항	관련 사업
1.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 돌봄사업	열린육아방
2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	공동육아나눔터
3.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 등에게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	우리동네 보육반장

4.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	**아이돌보미사업**
5. 시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후 돌봄,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	우리동네키움센터
6 .「아동복지법」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	지역아동센터 운영
7.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	그 외

○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및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4조[1]에 따라 여성부가족부 주관으로 서울특별시는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'아이돌봄 지원사업'을 운영중임.

◎ 現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

- 사업내용 :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
- 사업대상 : 만3개월~만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
- 아이돌보미 : 3,646명('21.11월 기준)
- 서비스종류 : ①시간제, ②영아종일제, ③질병감염아동지원, ④기관연계

서비스 종류		대상연령	이용시간	서비스내용
시간제	일반형	만3개월~12세이하	2시간 이상	임시보육, 등하교, 보조, 학습보조
	종합형			기본형 + 아동 관련 가사활동
영아종일제		만3개월~36개월이하	3시간 이상	가정돌봄 활동 제공 지원 등
질병감염아동지원		만12세 이하	2시간 이상	법정 전염성·유행성 질병 감염 아동 돌봄
기관연계		만12세 이하	2시간 이상	사회복지시설, 보육시설 등 돌봄 보조

1)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국가와 **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**

○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‘21.11월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는 전체 대상 영유아 중 48.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’22.1월~4월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비율은 전체 대기가정 중 60%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- 맞벌이 증가, 가정 보육 선호 등 지속적인 영아의 돌봄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계속적인 공공 아이돌보미 증원을 통한 영아 돌봄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 돌봄 수당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정책적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
◎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(‘21.11월 기준)

(단위: 명)

합계	영아				유아
	소계	만 3개월 ~12개월 미만	만 12개월 ~24개월 미만	만 24개월 ~ 36개월 미만	만 3세 ~ 12세 미만
11,805 (100%)	5,721 (48.5%)	2,559 (21.7%)	1,695 (14.4%)	1,467 (12.4%)	6,084 (51.5%)

◎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자 현황

(단위: 가정수)

구분	‘22.1월	‘22.2월	‘22.3월	‘22.4월
전체 대기자 가정	274(100%)	298(100%)	306(100%)	264(100%)
영아 대기자 가정	191(69.7%)	193(64.8%)	192(62.7%)	163(61.7%)

나. 예산 지원 근거(안제6조제2항)

○ 통계청[2]에 따르면 만36개월 이하 영아의 주 양육자는 혈연의 비중

이 63%로 높으며, 그 중 조부모 등 친인척을 통한 양육 비중이 14%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영아의 경우 자녀가 어려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 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남.

<서울특별시 보육상태별 아동인구>

구 분 (만0~2세)	합 계	혈 연				비 혈 연		
		소 계	부모	부모 +조부모	조부모 또는 기타 친인척	어린이집 이용	베이비시터 등	기타
영아수	150,859	94,864	74,555	9,476	10,833	41,107	2,953	11,935
비중	100%	63%	49%	6%	8%	27%	2%	8%

○ 동 개정안은 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'자치구, 비영리법인 및 기관, 비영리단체 등' 뿐만 아니라 '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'에게도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공공 돌봄서비스 공급부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민간 및 개인이 돌봄에 참여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들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- 다만 본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지원대상, 예산규모 및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---

2) 통계청(2020 인구주택총조사, 보육상태별 아동인구) 통계

3 종합 의견

○ 동 개정안은 맞벌이가정 증가 등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현행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봄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특히 영아아동에 대한 돌봄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돌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및 개인에게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.

-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 보육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본 개정안의 정책적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.

○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차별화를 통해 돌봄공백 없이 상호보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 :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6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8월 29일
발 의 자 : 김영옥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성연, 박영한, 서호연, 신복자, 윤영희, 이경숙, 이상욱, 이영실, 이종환, 임만균, 정준호, 최민규, 홍국표, 황유정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○ 영아가정의 양육현실을 고려한 돌봄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,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으로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. (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)

나.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을 수행을 위해 자치구, 법인 및 기관, 단체 등에 행정적,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2항)

다.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,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구, 법인 및 기관, 단체 등에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돌봄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6조(돌봄 지원 사업) ① 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
7. (생 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, 비영리법인 및 기관,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구, 법인 및 기관, 단체 등에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